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99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편의지원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함(안 제4조).

- 나.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것을 정함(안 제5조).
- 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점검 사업,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 (속기) 지원 사업,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교육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papermoo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
 - 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사항을 강구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 을 말한다.
-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식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학생편의지원기본계획)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편의지원기본계획을 매

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애학생편의지원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1. 장애학생 편의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 2.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 3.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 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점검 사업
 - 2. 한국수어 통역 · 문자통역(속기) 지원 사업
 - 3.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사업
 - 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
 - 5.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 6.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 · 홍보 사업
 - 7.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 8. 그 밖에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 청 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4조 장애학생편의지원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 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3. 제6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촉위원은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 2. 39세 이하의 장애인
 - 3. 장애학생 학부모
 - 4. 장애학생 관련 단체의 대표
 - 5.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의사소통 지원) 교육감은 의사소통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한 개인·단체 및 법 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수화언어교육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비용추계서

- 1. 의안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 2.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 발생
 - 나. 관련 조문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제4조 2항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및 제 6조 (사업) 시행
- 3. 비용추계의 전제와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1)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보조공학기기, 수어통역, 문자속기 등 장애유형 별 편의지원 운영 예산 확보
 - 2) 수어통역 인건비는 평균 급여 인상률(3.0%) 2020년부터 장애학생 유형별 편의지원 대상 확대로 인한 증가분 3,000천원 반영
 - **나. 추계 결과** : 865,820천원/5년간
 - 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별첨)
 - **라. 재원조달방법** : 자체예산(83%), 특별교부금(17%)
- 4. 예산담당부서와 합의
- 5. 그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없음
- 6. 작성자: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류지영(042-610-1030)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X	입	163,091	169,814	173,649	177,599	181,667	865,820
자체수입		133,091	139,814	143,649	147,599	151,667	715,820
특별교부금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세 출		163,091	169,814	173,649	177,599	181,667	865,820
인건비		124,091	127,814	131,649	135,599	139,667	658,820
보조공학기기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운영비		9,000	12,000	12,000	12,000	12,000	57,000
재원 조달							
의 존 재 원	소 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특별교부금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자 체 수 입	소 계	133,091	139,814	143,649	147,599	151,667	715,820
	자체수입	133,091	139,814	143,649	147,599	151,667	715,82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	기 타 부담, 민자 등)						

관계 법 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 1. 시각장애
 - 2. 청각장애
 - 3. 지적장애
 - 4. 지체장애
 - 5. 정서 · 행동장애
 -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7. 의사소통장애
 - 8. 학습장애
 - 9. 건강장애
 - 10. 발달지체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 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 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 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의 제공
 -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